

[1차개정 '25.02.06.]

전북 농기계 · 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운영지침

2025. 2.



「 전북 농기계·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」

1. 목 적

본 지침은 「전북 농기계·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운영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」은 전북지역 내 농기계·부품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(이하 “기술개발지원사업”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지침은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매칭하는 사업 예산에 관하여 적용되며 단,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 공고문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「자체연구사업 운영요령」, 「민간수탁연구사업수행요령」,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에 따른다.

2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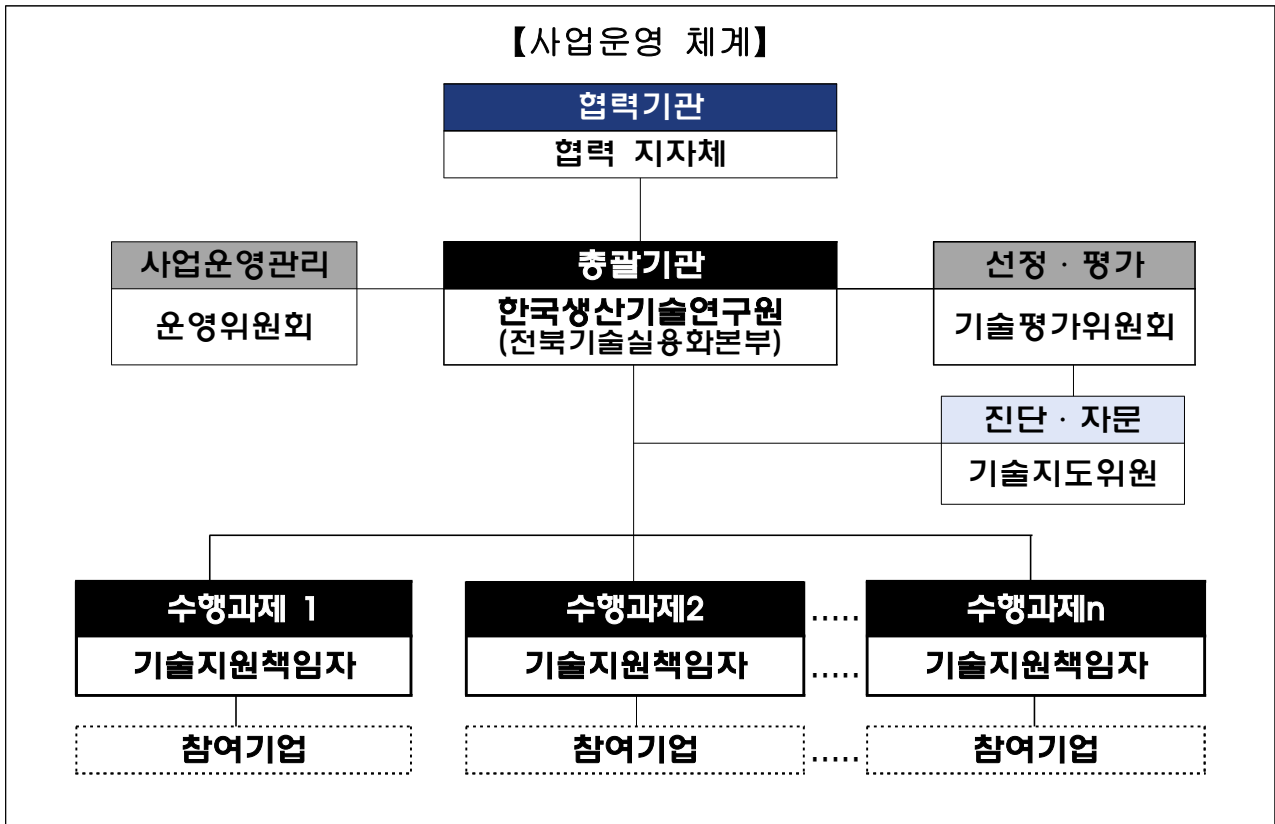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령 및 기타 부속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“기술개발 지원사업”이라 함은 지자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사업공고 시 접수된 전북지역 내 기업의 농기계·부품 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기간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협력기관”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의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며, 본 사업에 사업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지자체를 말한다.
2. “총괄기관”라 함은 사업의 세부시행기준, 사업의 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및 자문, 평가위원 선발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기관(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)을 말한다.

3. “**참여기업**”라 함은 전북지역 관내 농기계·부품산업 관련 기업으로서 본 사업에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, 매칭된 기술지원책임자와 사업계획을 작성 후 최종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. 단,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매칭재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소재지 기업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다.
4. “**기술지원책임자**”라 함은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괄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,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기획, 수행, 연구비 편성·집행 및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5. “**기술지도위원**”이라 함은 농기계·부품 산업 관련한 연구 및 현장 재직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자로서,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확인, 서류를 검토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한다.
6. “**기술평가위원회**”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기술개발지원 및 현장 애로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선정평가 및 종료평가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7. “**진단**”이라 함은 기업에서 신청한 기술수요조사서의 기술개발지원 및 현장애로 기술에 대하여 기술지도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확인, 협의 또는 검토하고 총괄기관 소속의 해당분야에서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적절한 기술지원책임자를 매칭하는 절차를 말한다.
8. “**처방**”이라 함은 기술지원책임자가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의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On-Line(유·무선 통화, E-Mail)과 Off-Line(현장방문)으로 진행되는 상담과 세미나 개최, 정보제공, 교육실시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.
9. “**과제제안**”이라 함은 기술지도위원의 추천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의 기술지원책임자가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사업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
10. “**과제화**”라 함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
3. 추진체계 및 절차

가. 추진체계



1) 협력기관

“전북 농기계·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”에 지방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.

2) 총괄기관

“전북 농기계·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”의 기본계획 수립, 예산확보 및 사업의 총괄관리 등의 수행한다.

3) 운영위원회

가) 총괄기관은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할 수 있다.

- ①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② 신규과제 선정,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- ③ 참여기업의 제외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산·학·연 전문가 중 호선한다.

- ① 산·학·연·관 전문가
- ② 사업 참여 지자체 소속의 전문가
- ③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다)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/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참석 위원의 2/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.

라)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4) 기술평가위원회

가) 총괄기관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① 신규과제 선정, 종료평가
- ② 선정평가 시 기술개발 내용 및 사업비 조정
- ③ 세부과제 종료 후 기술개발 결과 및 성과 활용 평가

나) 평가위원회는 산·학·연 기술 및 경제·시장전문가, 사업관련 관리기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② 사업 참여 지자체(도·시·군) 소속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다)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.

- ①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
- ② 불성실·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
- ③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

5) 기술지도위원

가) 자격

전북지역 내 농기계·부품산업 관련 연구 및 현장재직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자를 1년의 임기로 선임하고,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
나) 역할

기술지도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.

- ①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진단
- ② 참여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확인, 협의 및 정밀진단
- ③ 참여기업의 기술수요와 부합되는 기술지원책임자 추천 및 매칭
- ④ 후속과제로 도출된 RFP 점검 및 정밀진단

6) 참여기업

가) 자격

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

나) 기능(책임과 의무)

- ① 기술수요조사 공고에 따른 기술수요 조사서 제출

- ② 제출한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대응
- ③ 매칭된 기술지원책임자와의 세부과제 계획서 작성
- ④ 세부과제 참여를 위한 기업부담금 매칭
- ⑤ 기술지원책임자와 세부과제 수행
- ⑥ 세부과제 수행결과의 활용
- ⑦ 기타 사업수행에 따른 요청자료의 대응

7) 기술지원책임자

가) 자격

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괄기관(한국생산기술연구원)에 소속된 연구자

나) 기능(책임과 의무)

- ① 참여기업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처방 제시
- ② 참여기업과 세부과제 계획서 작성·제출
- ③ 참여기업과 세부과제의 성실한 수행
- ④ 세부과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
- ⑤ 후속 연계과제의 RFP 도출 및 작성

[참고] 기술평가위원 자격 요건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 - 1. 산업계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
 -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 - 다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
 - 2. 학계 :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 - 3. 연구계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
 -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 - 4.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
 - 5.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사, 기술지도사 등 기술·경영전문가
 - 6.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
 - 7.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
- 다만,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

나. 추진절차

사업 추진	기술수요조사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위원회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요령 수립 및 기술지도위원 선발 세부과제 기술수요조사 공고 	1월			
	↓					
	기술수요조사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책임자 및 기술지도위원 현장방문 적합 연구분야 연구책임자 매칭 세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	2월초			
↓	↓	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과제 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접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지원책임자가 접수/신청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	2월말		
			세부과제 수행	기업 매칭 및 세부과제 확정·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과제에 대한 기업비용 매칭 세부과제 최종사업계획서 협약 세부과제 시작 	3월초
				세부과제 수행 및 중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책임자 및 기술지도위원 과제수행기업 현장방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 성실 수행 및 과제추진 현안사항 파악 차년도 수행할 기술수요조사 도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세부과제 현안사항 해결 	3월 ~ 과제종료
세부과제 종료	↓	세부과제 종료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종료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량적, 정성적 목표점검 평가 	12월중		
		과제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부과제 정산 및 회계감사 성과발표 및 과제성과 추적조사 	12월말		

4.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

가. 사업계획의 수립

1) 신청자격

가) 세부과제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제출한 전북 지역 내 농기계·부품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해당연도에 1개 과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전 2개년도 연속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.

나) 본 사업에 참여한 기술지원책임자는 최근 2년의 평가결과 “미흡”이 1회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다.

다) 과제 선정 시 사업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, 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 한다.

① 전년도 참여기업은 참여를 제한한다.

② 과제 참여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재참여 기회를 부여 하나, 과제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시 지원을 제한한다.

라) 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과제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제한

2)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
가) 세부과제의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북지역 내 농기계·부품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하며, 수요공고 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기술지도위원의 진단에 따라 총괄기관의 기술지원책임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.

나) 기술지원책임자는 참여기업과 협의 후 별지 제2호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제안을 신청한다.

다) 사업계획서의 제출은 기술지원책임자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절차에 따라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3) 세부 지원사업 유형

가) 농기계·부품 첨단화 기술개발사업

- ① (사업내용) 전북특별자치도 농기계·부품 산업 관련 기업의 친환경, 지능화, 디지털화, 스마트화, 뿌리·융복합 등 첨단화 관련 제조공정 또는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
- ② (지원대상) 제안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
- ③ (지원기간) 12개월
- ④ (지원규모)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약 1억원의 사업비 지원
- ⑤ (연계목표) 국가R&D과제 응모를 위한 기술개발제안서 도출

나) 농기계·부품 밀착형 기술개발지원사업

- ① (사업내용) 전북특별자치도 농기계·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현장의 공정 개선, 제품성능 및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지원
- ② (지원대상) 단기적으로 애로기술 및 공정개발이 가능한 제안내용
- ③ (지원기간) 6 ~ 10개월 (필요시 최대 1년)
- ④ (지원규모)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약 0.5억원의 사업비 지원
- ⑤ (연계목표) 국가R&D과제 응모를 위한 기술개발제안서 도출

4)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

가) 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정밀분석 지원

나) 기업별 현 기술수준, 생산제품, 특허 등 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분석

다) 기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

라) 기술지원책임자와 수요기술에 대한 세부사항 공동수행

마) 기업별 애로기술 및 전략기술 도출 지원

바) 기술·지식정보 제공 및 기술상담

나. 세부과제의 선정평가

1)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

가) 기술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선정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,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한다.

구 분	평 가 점 수				
	90점이상	80점이상 90점미만	70점이상 80점미만	60점이상 70점미만	60점미만
평가 결과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선 정			탈 락	

나)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한다.

- ① 전북뿌리산업협의회 회원사
-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혁신파트너기업(KPI)
-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- ④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합원

다) 기술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 및 예산규모를 확정하며,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술지원 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
- ① 과 제 명
- ②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
- ③ 기타 필요사항

라) 기술지원책임자는 선정평가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.

마) 총괄기관은 이의가 신청된 경우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개최 결과를 기술지원책임자에게 1개월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다. 협약의 체결 및 변경

1) 협약체결

가) 협약의 구분

- ① 총괄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협약은 「사업협약」이라 한다.
- ② 수행과제에 대한 총괄기관, 기술지원책임자 및 참여기업 간의 협약은 「세부과제 협약」으로 구분한다

나) 사업협약 체결

- ① 사업협약은 총괄기관과 협력기관의 협약으로,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이 확정되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.
- ② 사업협약은 세부과제의 협약체결 이전에 협약체결을 완료한다.

다) 세부과제 협약체결

- ①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총괄기관, 기술지원책임자 및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다.
- ② 기술지원책임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인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이 선정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㉠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관련 과제수행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 - ㉡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,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사업을 선정을 취소한다.

2) 협약변경

가) 사업협약의 변경

- ① 협력기관은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기관에게 협약사항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총괄기관은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협력기관의

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- ㉠ 사업총괄책임자의 변경
- ㉡ 수행과제 참여기업의 변경
- ㉢ 수행과제의 조기종단
- ㉣ 기타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사항

나) 세부과제 협약의 변경

- ① 총괄기관은 세부과제의 협약 변경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「자체연구사업 운영요령」, 「민간수탁연구사업수행요령」 및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의 협약 및 예산변경 기준에 따라 자체 변경사항 및 승인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약의 변경사항 요청이 있을 시, 연구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위원회 또는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력기관에 통보한다.

라. 사업 추진결과의 보고 및 평가

가) 결과보고

- ① 기술지원책임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최종보고서'에 의거하여 작성 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,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중간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기관은 현장실태조사, 사업진행 검토 등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산·학·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나) 결과평가

- ① 기술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과보고서 및 참여기업 대표가 직접 평가하는 '기업만족도 조사'를 바탕으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- ②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(국가R&D과제 선정, 매출액, 고용 등)

에 대한 추적조사 응하여야 한다.

- ③ 사업의 결과가 미흡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나) 사업관리

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공고문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「자체연구사업운영요령」, 「민간수탁연구사업수행요령」,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, 「위탁연구사업관리요령」에 따르며, 그 밖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
5. 사업비 산정 및 사용관리

1) 사업비 매칭비율

한국생산기술연구원(자체분담금)과 지방비 는 5:5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.

* 연도별 사업비 확보에 따라 비율은 달라 질 수 있음

2) 매칭 부담금의 사용관리

가) 매칭재원에 따라 1개의 사업에 2~3개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.

나) 지자체 부담금에 대해 과제협약 후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매칭부담금 사업 생성

다)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매칭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

*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매칭사업 예산은 자체심의위원회

3) 사업비 산정기준

가) 인건비

① 지자체 자원 : 현물, 현금 참여시 직접비의 30% 이내

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책정

나) 연구수당

① 지자체 자원 : 인건비 현금집행액의 20% 이내 편성

-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원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책정

다) 간접비

- ① 지자체 재원 : 민간수탁사업 수행요령 간접비 편성기준 준용
-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원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책정

라) 인프라활용비(기업부담금)

- ① 편성기준 : 사업비의 10% 편성 (현금100%)
- ② 사용기준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 운영재원으로 사용
* 전기료, 제세공과금, 장비/시설 유지보수비(용역포함)으로 활용

마) 위탁연구비

- ① 기술평가위원회 선정평가의 위탁연구비 편성승인 시 산정가능
- ② 대상사업 : 농기계·부품 첨단화 기술개발사업
- ③ 위탁가능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교
- ④ 편성기준 :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 이내 (기업매칭금 제외)